

1. 개정이유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682호, 2022. 7. 5. 공포·시행)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에 따른 변경된 법률명 반영

나.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안제2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u>	<u>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비상대 비자원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 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u>비 상대비자원 관리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9	제1조(목적) ----- 「<u>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u>」 ----- ----- ----- -----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u>」 --- ----- <u>제2조제2호</u>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양성평등기본법</u>」 제46조 <u>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 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자원조사) -----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령</u>」-----

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회 실시한다.	----- ----- -----.
---	-----------------------------------